

서울특별시상징물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904
----------	-----

2009년 7월 10일  
교육문화위원회

## 1. 심사경과

-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09년 6월 11일, 남재경 의원 외 12인
- 나. 회부일자 : 2009년 6월 15일 회부
- 다. 상정일자 : 제216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교육문화위원회 4차회의  
(2009년 6월 29일, 상정·의결)

##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 설명자: 강철원 홍보기획관)

- 서울특별시 상징물의 종류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현행 규정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서,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서울특별시 상징물 중 휘장 및 브랜드를 서울색을 적용한 CI 이미지로 변경하고,
  - “Hi Seoul”로 규정된 브랜드에 새로운 시정비전과 목표에 부합되는 서브슬로건 “SOUL OF ASIA”를 추가하며,
  - 서울의 상징으로 새로 선정된 “해치”를 심벌로 규정하고, 기존 캐릭터인 “왕범이”는 해치캐릭터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삭제하도록 하였음.

- 그리고 상징물의 사용승인 취소사유 중 “상징물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때”를 “사용조건에 위배되는 때”로 보다 명확히 규정하였음.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규: 「상표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나. 예산조치: 디자인서울총괄본부와 합의되었음
- 다. 기 타: 없음

###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김동수)

-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의 상징물을 새로 정하고, 서울색을 적용한 CI를 수정하는 한편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 개정하려는 주요 내용은
  - 첫째, 서울특별시의 상징물 정의에서 “캐릭터”를 “브랜드”, “심벌”로 수정하고,
  - 둘째, 서울특별시 휘장과 브랜드의 색상을 단청색인 서울색으로 변경하고, 브랜드에 Seoul of Asia란 슬로건을 추가함.
  - 셋째 서울의 “캐릭터”인 “왕범이”를 삭제하고, “심벌”로 “해치”를 지정함.
  - 넷째 상징물의 승인취소 조건을 강화하고, 별표의 사용서식 정리 및 시행규칙을 삭제하는 등 조문의 형식과 내용을 정리한 것임.

○ 이를 조항별로 설명 드리면

안 제2조에서 “캐릭터”를 “브랜드”, “심벌”로 수정하려는 것은 서울시 캐릭터인 “왕범이”를 삭제하고, 새로운 상징물인 “해치”를 심벌로 지정하고, 하이서울 마크를 브랜드로 규정하기 위한 것임.

○ 서울시 “캐릭터”인 “왕범이”를 삭제하고 “해치”를 서울시 “심벌”로 지정하려는 것은

- 왕범이가 서울시의 상징물으로써 시민들에게 인지도가 약하고, 88올림픽 마스코트인 “호돌이”와 유사하여 새로운 상징물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서울을 상징하는 가장 대표적인 이미지에 대한 공론화를 거쳐 경복궁이 서울을 대표하는 이미지라는 결과가 도출되었음. 그러나 경복궁은 상징물로 활용하기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에 따라 경복궁의 정문인 광화문 앞에 설치된 “해치상”을 서울의 대표적인 이미지로 결정하여 서울의 심벌로 규정하려는 것임.

○ 서울시는 해치상을 서울의 심벌로 규정하여 베를린의 “버디 베어(Buddy Bear)”나 싱가포르의 “멀라이언(Merlion)”과 같이 우리시를 대표하는 상징물로 홍보·마케팅하여 세계적인 상징물이 되도록 한다는 계획이며, 이를 위하여 서울의 관문마다 “해치상”을 세우고, 해치상을 조성한 해치의 거리를 조성하는 등 서울을 “해치의 도시”로 만든다는 전략임.

서울시의 이러한 전략은 “서울특별시”를 “해치특별시”로 도시명을 변경해야 할 정도로 거창한 계획을 세우고 있지만 베를린의 “버디 베어”나 싱가포르의 “멀라이언상”이 조례로 명문화하거나, 거리를 조성하여 유명한 상징물이 된 것이 아니며,

일부에서는 “해치상”을 서울을 대표하는 이미지로 삼기에는 부족함이 있으며, 해치상은 중국에서 유입된 것이므로 서울의 심벌로 지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견해가 있음.

- 안제 3조와 관련된 별표에서 휘장과 브랜드의 지정 색상을 수정하려는 것은 해·산·강의 색상을 4원색을 이용한 빨강, 초록, 파랑색에서 단청빨강, 서울하늘색 등으로 수정하는 것임. 단청 빨강색은 기존의 지정색 보다 조금 더 짙어졌으며, 초록색은 노랑색이 추가되어 조금 밝아졌고, 청색은 하늘색과 같이 조금 연해진 것임. 이는 우리의 전통 색상인 오방색을 바탕으로 서울의 이미지와 조화롭게 하기 위하여 전문가들의 자문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 안 제3조의 제3호에서 “캐릭터:별표3”을 “심벌:별표3”으로 수정한 것은 “캐릭터”란 용어를 “심벌”로 수정하고, “캐릭터”인 “왕범이”를 “심벌”인 “해치”로 수정하는 것이므로 해치를 캐릭터의 의미보다 훨씬 중요한 심벌로 바꾸는 것임.

이는 “해치”가 서울의 캐릭터로서가 아니라 서울의 심벌로서의 타당한가의 문제이며, 해치가 “서울시의 심벌”로 적정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매우 신중하게 결정되어야 할 것임.

“서울의 심벌”이란 서울을 상징하는 대표성과 역사성, 그리고 시민들의 공감대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며, “심벌”이란 용어는 “상징”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상징물조례의 조항내에서 “상징물”의 종류 중 하나로 “심벌(상징)”을 정의하는 것은 자연스럽지 못하므로 현행과 같이 “캐릭터”로 하는 것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됨.

○ 동 조례안 제7조 제3항에서 상징물 사용조건에 위배되는 때에는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서울시 상징물에 대한 효율적인 활용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이라고 사료되며,  
제11조의 시행규칙을 삭제하려는 것은 조례의 시행과 관련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라는 규정을 두는 것은 불필요한 조항으로 규칙을 제정하는 않을 경우 조례를 위반하는 것이 되므로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법제지원팀의 권고에 따른 것임.

○ 이에 따른 종합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면

동 조례는 1998년 제정된 홍보기획관의 소관의 조례이나 동 개정조례안은 “디자인서울총괄본부”에서 주도하여 금년 3월에 해치를 서울시의 공식적인 상징물로 발표한 바 있으며, 해치를 서울을 홍보하는 매개체로서 활용하여 세계적인 상징물이 되도록 한다는 취지는 바람직 한 것으로 사료됨.

그러나 상징물을 규정한 현행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상징물을 공식적인 상징물로 발표하고, 이를 마크로 제작하여 관계 공무원들이 부착하게 하는 등 이미 추진된 상황에 맞추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은 의회의 기능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물론 현행 조례를 위반한 것이므로 동 조례안의 타당성에 앞서 먼저 지적 되어야 할 것임.

○ 또한 상징물(심벌,Symbol)의 종류를 규정하는 세부항목에 “심벌”이란 상위개념의 “심벌”로 규정하는 것은 자연스럽지 못하며, 동 개정조례안의 제3조에서 상징물을 정의한 휘장, 브랜드, 심벌 등은 서로 유사한 용어이며, 이를 정의한 6개항의 단어에 3

개국(한글, 한자, 영문)의 문자가 사용되고 있으므로 괄호안에 설명을 덧붙여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며, 서울특별시의 “심벌”로 “해치”가 과연 적절한가가 고려되어야 할 것임.

- 서울의 심벌(Symbol)이란 서울을 상징하는 대표성과 역사성, 그리고 시민들의 공감대가 이루어 졌을 때 가능할 것이며, 또한 상징물과 관련하여 우리 용어 중 적절한 표현이 없어서 유사한 외래어가 사용될 수밖에 없는 어려움은 있다고 사료되며, 상징물과 관련된 “심벌”, “캐릭터”, “마스코트”, “엠블런”, “심벌마크” 등 해치를 규정하는 용어로 어떤 것을 선택하는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 5. 질의 및 답변요지 :

- 질의 : 조례로 규정된 서울시 상징물에 대하여 해치를 새로운 상징물로 공표하고, 관련 홍보물을 제작하여 부착하는 등 이미 추진이 된 상태에서 현행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은 사전승인을 받아야할 사항을 사후승인을 받는 것이므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기를 바람.
- 답변 :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할 사안에 대하여 집행 후 승인을 받는 일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질의 : 해치를 광화문 입구에 설치한 것은 관악산의 화기를 누르고 나쁜 기운을 막기 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를 각 시계마다 설치한다는 것이 해치가 지닌 의미와 맞는 것인지 의심스럽고, 왕범이를 서울시공식 캐릭터로 20년이 넘도록

홍보하였으나 시민들은 그 존재 자체를 모르는 상황인데 세계적인 상징물로 해치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시간과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 답변 : 서울을 상징하는 심벌이 필요하다는 해치에 관한 입체적인 홍보와 마케팅을 통해 서울시민들에게 사랑 받는 상징물이 되도록 하는 것은 물론 해치가 빠른 시간 내에 세계적인 서울의 상징물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 토론요지 : 구성하지 않았음

7. 소위원회의 심사보고 요지 : 구성하지 않았음

8. 심사결과 : 원안 가결 (출석위원 전원 찬성)

9.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서울특별시상징물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상징물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상징물조례”를 “서울특별시 상징물조례”로 한다.

제1조부터 제8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를 상징하는 상징물을 규정하고, 이를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상징물”이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고 한다)를 상징하는 휘장, 브랜드, 심벌, 동물, 식물 등을 말한다.

제3조(상징물의 종류) 상징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휘장 : 별표 1
2. 브랜드 : 별표 2
3. 심벌 : 별표 3
4. 꽃 : 개나리
5. 나무 : 은행나무
6. 새 : 까치

제4조(상징물의 변경 등)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상징



물을 추가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청회 등 여론수렴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5조(상징물의 관리 등) ① 시장은 상징물이 제정 또는 개정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고, 그 품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상징물을 사용하는 때에는 「서울특별시 상징물 표준화 규정집」 및 「서울상징 해치브랜드 디자인가이드」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제6조(상징물 관련 사업 등) ① 시장은 상징물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응용상품의 개발 또는 제작
2. 주요사업이나 행사 등에의 활용
3. 상징물을 활용한 수익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의 관련 사업을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상징물의 사용승인) ① 상징물을 활용하여 물품 등을 제작하거나, 행사 등에 이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상징물사용 승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사용 승인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예정일 30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상징물사용 변경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상징물의 사용 승인을 받은 자는 제5조제2항에 따라 상징물을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목적이나 사용조건에 위배되는 때에는 시장이 사용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제8조(사용료) ① 상징물 사용 승인을 받은 자는 시장에게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상징물을 활용하여 수익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용자에게 대한 사용료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은 상호 협약으로 정한다.

③ 행사 등에 상징물을 활용하고자 하는 사용자는 사용 승인을 받은 때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사용료 금액은 시장이 정한다.

④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시가 후원하는 경우
2. 정부기관 및 교육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
3. 공공기관 또는 사회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제10조를 제9조로 하여 다음과 같이 하고, 제11조를 삭제한다.

제9조(위반시 조치사항)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사용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상징물을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상표법」·「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규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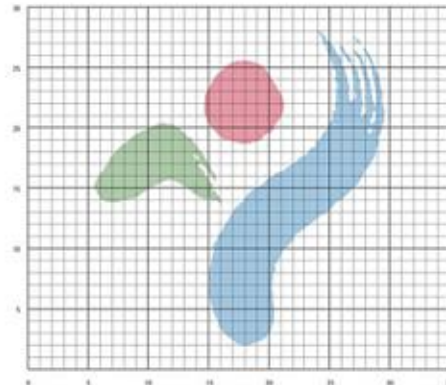
## **[별표 1] 상징물의 종류(제3조제1호 관련)**

### **1. 휘장**

(1) 기본형



(2) 작도법(그리드)



### **2. 휘장의 의미**

휘장은 한글 “서울”을 서울의 산·해·한강으로 표현하여 전체적으로는 신명나는 사람의 모습을 형상화한 것으로 “인간중심 도시”를 지향하는 서울을 상징하고, 자연·인간·도시의 맥락 속에서 녹색 산은 환경사랑, 청색 한강은 역사와 활력, 가운데 해는 미래의 비전과 희망을 함축한다.

### **3. 색상**



단청빨간색(Seoul Red)

C4 M100 Y71 K20  
R174 G25 B50



SC4904

C81 M16 Y99 K4  
R46 G133 B60



SC7912

C87 M35 Y0 K0  
R0 G121 B188

## [별표 2] 상징물의 종류(제3조제2호 관련)

### 1. 브랜드

(1) 기본형



(2) 작도법 (그리드)



### 2. 브랜드의 의미

(1) Hi는 전 세계 사람들이 가장 많이 쓰는 영어 인사말로서 지구촌에 밝고 친근한 서울의 메시지를 전달할 뿐 아니라 다양하고 활기찬 서울의 매력을 표현하고, High와 동음으로 대한민국의 수도를 뛰어 넘어 지구촌시대의 세계 대도시간 경쟁에서 서울이 나아가야 할 비전을 제시한다.

(2) Soul of Asia는 “혼, 정신, 정수” 등을 뜻하는 Soul이 Seoul과 영어식 발음이 유사한 점에 착안하여, 서울이 아시아의 중심으로서 다양한 아시아의 문화를 포용하고 융합하여 서울문화의 진수를 보여주고 아시아 전통 위에 디지털 첨단문명이 어우러져 곧 세계의 중심으로 도약한다는 비전을 제시한다.

### 3. 색상



단청빨간색(Seoul Red)

C4 M100 Y71 K20  
R174 G25 B50



SC1949

C0 M37 Y100 K0  
R241 G153 B0



SC7912

C87 M35 Y0 K0  
R0 G121 B188

## **[별표 3]** 상징물의 종류(제3조제3호 관련)

### **1. 심벌**

#### (1) 기본형



#### (2) 형태

- 광화문 해치상의 형태를 기본으로 하되 기존 이미지 탈피
- 정면에서 약간 측면으로 바라본 각도, 시선은 약간 위를 향함
- 얼굴 형태를 부각하여 역동적·진취적인 이미지 강조

#### (3) 색채

서울하늘색을 사용하여 부드럽고 세련된 이미지로 수변동물 특성, 청렴·청결 등의 상징 표현

### **2. 심벌의 의미**

(1) 서울이 갖는 역사적 전통성과 문화적 고유이미지를 표현하면서 서울 시민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문화적 감성으로 개발된 서울의 대표 상징 마크이다.

(2) 시비와 선악을 판단하여 정의를 지키는 상상의 동물인 해치는 화재나 재앙을 물리치는 신수로서의 의미도 지니고 있는데 이는 단지 화마 뿐 아니라 온갖 나쁜 기운을 막아줌과 동시에 행운과 기쁨을 가져다 주는 존재로 서울을 지켜주는 수호자로서의 의미도 함축한다.

### **3. 색상**



서울하늘색(Seoul Blue)

C63 M30 Y0 K0

R85 G139 B207

<별지 제1호서식>

<b>상징물사용 승인 신청서</b>	
신 청 인	회 사 명
	성 명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FAX)
사 용 상 징 물	
사 용 기 간	
사 용 목 적	
사 용 내 용(구체적으로)	
<p>&lt;첨부자료&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인의 경우 : 주민등록증사본·사용계획서·사업자등록증 사본(해당되는 경우) 각 1부</li> <li>○ 법인의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사용계획서·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li> </ul>	

<별지 제2호서식>

<b>상징물사용 변경 신청서</b>	
신 청 인	회 사 명
	성 명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FAX)
사 용 상 징 물	
사 용 기 간	
변 경 목 적	
변 경 내 용(구체적으로)	
변경사유	



##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서울특별시상징물조례</u>		<u>서울특별시 상징물조례</u>		
제1조(목적) 이 조례는 <u>서울특별시(이하 “시”라고 한다)</u> 를 상징하는 상징물을 규정하고, 이를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u>서울특별시를</u> 상징하는 상징물을 규정하고, 이를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u>서울특별시를</u> 상징하는 상징물을 규정하고, 이를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u>서울특별시를</u> 상징하는 상징물을 규정하고, 이를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u>서울특별시를</u> 상징하는 상징물을 규정하고, 이를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 <u>상징물</u> ’이라 함은 <u>시를</u> 상징하는 휘장, <u>캐릭터</u> , 동물, 식물 등을 말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 <u>상징물</u> ”이란 <u>서울특별시(이하 “시”라고 한다)</u> 를 상징하는 휘장, <u>브랜드</u> , <u>심벌</u> , 동물, 식물 등을 말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 <u>상징물</u> ”이란 <u>서울특별시(이하 “시”라고 한다)</u> 를 상징하는 휘장, <u>브랜드</u> , <u>심벌</u> , 동물, 식물 등을 말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 <u>상징물</u> ”이란 <u>서울특별시(이하 “시”라고 한다)</u> 를 상징하는 휘장, <u>브랜드</u> , <u>심벌</u> , 동물, 식물 등을 말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 <u>상징물</u> ”이란 <u>서울특별시(이하 “시”라고 한다)</u> 를 상징하는 휘장, <u>브랜드</u> , <u>심벌</u> , 동물, 식물 등을 말한다.
제3조(상징물의 종류) <u>시를</u> 상징하는 <u>상징물</u> 의 종류는 다음 <u>각호</u> 와 같다.	제3조(상징물의 종류) <u>상징물</u> 의 종류는 다음 <u>각 호</u> 와 같다.	제3조(상징물의 종류) <u>상징물</u> 의 종류는 다음 <u>각 호</u> 와 같다.	제3조(상징물의 종류) <u>상징물</u> 의 종류는 다음 <u>각 호</u> 와 같다.	제3조(상징물의 종류) <u>상징물</u> 의 종류는 다음 <u>각 호</u> 와 같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휘장 : 별표 1</li> <li>2. 브랜드 : 별표 2</li> <li>3. <u>캐릭터</u> : <u>별표 3</u></li> <li>4. 꽃 : 개나리</li> <li>5. 나무 : 은행나무</li> <li>6. 새 : 까치</li> </ol>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휘장 : 별표 1</li> <li>2. 브랜드 : 별표 2</li> <li>3. <u>심벌</u> : <u>별표 3</u></li> <li>4. 꽃 : 개나리</li> <li>5. 나무 : 은행나무</li> <li>6. 새 : 까치</li> </ol>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휘장 : 별표 1</li> <li>2. 브랜드 : 별표 2</li> <li>3. <u>심벌</u> : <u>별표 3</u></li> <li>4. 꽃 : 개나리</li> <li>5. 나무 : 은행나무</li> <li>6. 새 : 까치</li> </ol>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휘장 : 별표 1</li> <li>2. 브랜드 : 별표 2</li> <li>3. <u>심벌</u> : <u>별표 3</u></li> <li>4. 꽃 : 개나리</li> <li>5. 나무 : 은행나무</li> <li>6. 새 : 까치</li> </ol>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휘장 : 별표 1</li> <li>2. 브랜드 : 별표 2</li> <li>3. <u>심벌</u> : <u>별표 3</u></li> <li>4. 꽃 : 개나리</li> <li>5. 나무 : 은행나무</li> <li>6. 새 : 까치</li> </ol>
제4조(상징물의 변경 등)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u>시</u> 상징물을 추가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청회 등 여론수렴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4조(상징물의 변경 등)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u>상징물</u> 을 추가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청회 등 여론수렴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4조(상징물의 변경 등)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u>상징물</u> 을 추가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청회 등 여론수렴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4조(상징물의 변경 등)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u>상징물</u> 을 추가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청회 등 여론수렴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4조(상징물의 변경 등)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u>상징물</u> 을 추가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청회 등 여론수렴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5조(상징물의 관리 등) ① 시장은 상	제5조(상징물의 관리 등) ① 시장은 상	제5조(상징물의 관리 등) ① 시장은 상	제5조(상징물의 관리 등) ① 시장은 상	제5조(상징물의 관리 등) ① 시장은 상



징물이 제정 또는 개정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고, 그 품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3조제1호 및 제2호의 상징물을 사용하는 때에는 서울특별시 이미지가발기본편람 및 응용편람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제6조(상징물 관련사업 등) ① 시장은 상징물을 활용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응용상품의 개발 또는 제작
2. 주요사업이나 행사등에의 활용
3. 상징물을 활용한 수익사업
4.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의 관련 사업을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상징물의 사용승인) ① 상징물을 활용하여 물품등을 제작하거나, 행사 등에 이용하고자 하는 자(이하“사용자”라 한다)는 시장에게 상징물사용승인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 승인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장에게 변경예정일 30일전까지 상징물 사용변경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를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징물이 제정 또는 개정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고, 그 품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상징물을 사용하는 때에는 「서울특별시 상징물 표준화 규정집」 및 「서울상징 해치브랜드 디자인가이드」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제6조(상징물 관련 사업 등) ① 시장은 상징물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응용상품의 개발 또는 제작
2. 주요사업이나 행사 등에의 활용
3. 상징물을 활용한 수익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의 관련 사업을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상징물의 사용승인) ① 상징물을 활용하여 물품 등을 제작하거나, 행사 등에 이용하고자 하는 자(이하“사용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상징물사용 승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사용 승인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 예정일 30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상징물사용 변경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상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상징물을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목적에 위배되거나 시 상징물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때에는 시장이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제8조(사용료) ① 상징물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시장에게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시 상징물을 활용하여 수익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용자에게 대한 사용료 납부시기·납부 방법등은 상호 협약으로 정한다.

③ 행사 등에 시 상징물을 활용하고자 하는 사용자는 사용승인을 받은 때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사용료 금액은 시장이 정한다.

④ 시장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시가 후원하는 경우
2. 정부기관 및 교육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
3. 공공기관 또는 사회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제10조(위반시 조치사항) 시장은 제7조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시 상징물인 휘장 또는 캐릭터를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상표법·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등 관계 법규

③ 상징물의 사용 승인을 받은 자는 제5조제2항에 따라 상징물을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목적이나 사용조건에 위배되는 때에는 시장이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제8조(사용료) ① 상징물 사용 승인을 받은 자는 시장에게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상징물을 활용하여 수익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용자에게 대한 사용료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은 상호 협약으로 정한다.

③ 행사 등에 상징물을 활용하고자 하는 사용자는 사용 승인을 받은 때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사용료 금액은 시장이 정한다.

④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시가 후원하는 경우
2. 정부기관 및 교육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
3. 공공기관 또는 사회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제9조(위반시 조치사항)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사용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상징물을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상표법」·「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

<p>의 규정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p>	<p>한 법률, 등 관계 법규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p>
<p><u>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과 관련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u></p>	<p>&lt;삭 제&gt;</p>